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1,366,598	18,640,998
일반회계	607,913,376	18,237,401
특별회계	13,453,222	403,597
기타특별회계	13,453,222	403,597
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124	4
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4,235,495	127,065
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1,676,549	50,296
건축진흥특별회계	125,948	3,778
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	97,145	2,914
상수도특별회계	5,794,989	173,850
수질개선특별회계	91,151	2,735
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639,976	19,199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	791,845	23,75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500,259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, 교부세,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(간주예산)